

대한종양내과학회 연구비 지원 운영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임상종양학 분야에서 대한종양내과학회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운영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규정에 따른 연구비는 “대한종양내과학회 연구비”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Oncology Research Grant”로 한다. 단, 대한종양내과학회 외의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 목적을 명시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3조 (재원)

본 연구비의 재원은 대한종양내과학회의 기금 및 외부 기관, 단체, 개인의 기부금으로 조성된다.

제4조 (연구과제공모)

1. 대한종양내과학회는 매년 또는 필요 시 연구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2. 연구과제 공모는 마감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대한종양내과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이를 대한종양내과학회 회원들에게 안내한다.
3. 연구과제 공모 시 해당 연도의 지원 대상 과제 및 지원 범위를 명시한다. 연구주제에 따라 지원 범위는 개별적으로 제시되며, 과제 선정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또한, 심사 시 가점 부여 기준을 별도로 안내할 수 있다.
4. 대한종양내과학회는 특정 주제를 정하여 별도의 연구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제5조 (연구과제 신청기한 및 접수)

연구비 신청, 연구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은 대한종양내과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괄 접수한다. 신청자는 공고 시 명시된 접수 마감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연구과제 신청 시 제출 서류)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신청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신청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연구과제 신청서 1부 (소정 양식)
2. 한글 이력서 1부 (명함판 사진 포함)
3. 최근 5년간 주요 연구업적 목록
4. 연구계획서
 - 연구 배경
 - 연구 목표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추진 전략 및 추진 체계
 -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비 사용 계획
5. 서약서 1부 (소정 양식)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최근 5년간 주요 연구업적 목록에 해당하는 저서 및 논문 등의 파일 또는 인쇄본)

제7조 (지원자격)

1. 연구과제 지원 자격은 대한중양내과학회 정회원으로, 연회비 미납이 없는 자에 한한다.
2. 국내에서 시행되는 연구만 지원 대상이 된다.
 - 국내에서 시행되는 연구란, 책임연구자가 국내 연구자이며, 국내 연구자의 참여도가 5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3. 기존 연구비 수혜자는 해당 연구의 연구종료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다시 연구과제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연구과제 심사)

1. 연구과제 심사의 심사위원장은 대한중양내과학회 연구이사로 한다.
2.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된 연구과제를 심사한다. 암 보험 또는 정책과 관련된 연구 주제의 경우 보험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 주제에 따라 필요 시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는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점수별 순위를 부여하여 1차 선정하며, 이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선정한다.
4. 심사 평가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조정될 수 있다.

- 연구의 필요성
 - 연구과제의 창의성, 도전성, 실현 가능성
 - 연구계획의 우수성: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연구기간, 연구비의 적정성 및 연구개발 역량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과 기대효과
 - 필요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조건은 연구과제 공모 시 명시한다.
 - 기타 연구과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준
5. 연구과제 규모에 따라 심사방식이 결정된다.
- 심사는 서면평가 단독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필요 시 1차 서면평가 후 2차 구두 발표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 해당 심사 방식은 연구과제 공모 시 명시한다.
6.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제공모에 참여한 책임연구자와 현재 동일 기관에 재직 중인 심사위원은 해당 과제의 심사에서 제외한다.
7. 연구과제의 내용 및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회 및 상임이사회의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9조 (연구비의 지급 및 사용)

1. 대한중양내과학회는 선정된 책임연구자의 소속 기관과 연구비 지급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명시된 지급 기한 내에 연구비를 입금한다.
2. 연구비는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대한중양내과학회에서 요청할 경우 책임연구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연구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간접경비의 비율은 책임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준에 따라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1. 책임연구자는 연구 시작 후 6개월 간격으로 중간보고서(소정 양식)를 연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위원회는 중간보고서를 심사한 후, 연구 지속, 연구비 조정, 연구 계획 수정 또는 연구 종료 등을 결정하여 책임연구자에게 통보한다.
2. 책임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 연구종료보고서를 연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기간 만료일 후 1년 이내에 대한중양내과학회 정기심포지엄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연구기간 만료일 후 2년 이내에 결과 논문을 대한중양내과학회 학회지 또는 SCI, SCIE 등재지, 국내학술 등재지에 게재 확정해야 한다. 논문에는 대한중양내과학회의 연구 지원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사사 표기 양식은 제12조를

따른다.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 발표 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 또한,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연구 결과가 불충분하여 학술지 게재에 실패한 경우, 연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구결과보고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3. 연구결과물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종양내과학회는 연구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4.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부실 또는 부당한 행위, 부정한 연구 수행 등이 확인될 경우, 연구비를 환수 조치하거나 향후 신규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5. 연구비 수혜자가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연구비 반환 여부 및 반환 금액을 결정한다.
 6. 연구 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 연구 종료가 어려운 경우, 책임연구자는 연구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 기간을 1회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7. 연구자가 향후 대한종양내과학회가 주관하는 연구비 지원에 신청하는 경우, 기 수행과제의 연구 실적 평가에 따라 선정 과정에서 가산점 또는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다.

제11조 (연구과제의 명칭)

1. 본 연구의 통칭은 "KSMO 연구"로 하며, 개별 연구과제의 명칭은 "KSMO-연구 승인 연도(4자리)-그해 연구 선정 순서(2자리)"로 한다.
 - 예: KSMO-2025-01
2. KSMO는 'Korean Society of Medical Oncology'의 약자이다.

제12조 (사사 표기 양식)

1. 국문: 본 연구는 대한종양내과학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대한종양내과학회에서 부여한 과제번호, 예: KSMO-2025-01)
2. 영문: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research grant from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Oncology (대한종양내과학회에서 부여한 과제번호, 예: KSMO-2025-01)

제13조 (부칙)

1. 본 규정은 대한종양내과학회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또는 상임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